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22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임문영 · 박민규 · 정태호
장철민 · 이언주 · 주철현
김원이 · 오세희 · 김남준
송재봉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공실·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고, 수분양자의 연체·파산 위험도 현실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설립승인 단계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할 절차를 두지 않고 있으며, 공실·미분양 현황을 파악하여 공개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입주업종을 열거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융복합 신산업을 수용하기 어렵고,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는 조업 전 임대 제한 등 공장부지에 준하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산업단지 밖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을 확인할 절차가

없고, 분양권 쪼개기 전매, 허위·과장 광고, 부적합 업종 입주 등을 규율할 수단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설립승인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제시 절차와 공실·미분양 현황의 공개 의무를 마련하고, 유희시설 매입사업의 지원 근거를 두며, 입주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안팎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수급을 조절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나. 관리자가 지식산업센터 현황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6제5항 및 제6항).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유희시설 매입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제1항).
- 라.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이 용도지역·산업단지 관련 규제로 제한되지 않도록 함(안 제28조의5제3항).
- 마.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주요 산업을 우선 모집한 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 전 임대를 허용함(안 제28조의4제4항·제5항 및 제38조의2제1항제3호).

- 바. 입주자의 입주신고 의무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확인·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5제4항 및 제28조의6제7항).
- 사. 승인 전 홍보관 설치,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게 전매, 부적합 용
도 양도·임대의 알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4제6항, 제28조의7제3항·제4항
및 제55조제1항).
- 아.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관리자·입주자에게 보고·자료제출을 명하
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제28조의2제1항·제5항”을 “제28조의2제1항·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의2제2항”을 “제28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신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및 입주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

인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식산업센터 설립 사업
2. 지식산업센터 내 유희시설 등의 매입 사업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관련 지원사업

제28조의4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주자를 우선 모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 모집에도 불구하고 분양 또는 임대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우선 모집 대상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할 수 있다.

⑥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분양 또는 임대 홍보관(분양·임대 대상 건축물의 견본 등을 전시하고 분양·임대에 관한 안내 및 상담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5항에 따른 추가 모집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5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주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28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에게 그 입주에 관한 신고(이하 “입주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의6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자는 지식산업센터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내 지식산

업센터의 경우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 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현황 및 그 사업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자료의 내용,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분양받은 건축물을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속, 파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는 경우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 또는 입주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 또는 입주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입주신고에 관한 장부, 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제4호 중 “제28조의4제4항”을 “제28조의4제7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홍보관을 설치한 자
2. 제2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
3. 제28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7.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6의2.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입주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7의2. 제28조의6제5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또는 임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 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식산업센터 입주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식산업센터의 전매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 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
1.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제5항에 따른 승인·허가·등록·확인 등의 신청	1. ----- ----- ----- -----제28조의2 제1항·제8항----- -----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28조의2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신고	2. ----- -----제28조의2제5항-----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생략)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신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 내 지식산업
센터의 분양 및 입주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의
견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기
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
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⑥ -----
-----제5항-----

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
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
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식
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수리
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
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

⑦

제6항

⑧

제5항

⑨

제7항

⑩

제8항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식산업센터 설립 사업

2. 지식산업센터 내 유희시설 등의 매입 사업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관련 지원사업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주자를 우선 모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 모집에도 불구하고 분양 또는 임대되

<신 설>

④ (생 략)

<신 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 ② (생 략)

<신 설>

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우선 모집 대상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할 수 있다.

⑥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분양 또는 임대 홍보관(분양·임대 대상 건축물의 견본 등을 전시하고 분양·임대에 관한 안내 및 상담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⑧ 제5항에 따른 추가 모집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

<신 설>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 ④ (생략)

<신 설>

<신 설>

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제33조에 따
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28조의6제
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
터를 관리하는 자에게 그 입주
에 관한 신고(이하 “입주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신고
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자는 지식산업센터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
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
우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 설>

<신 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 ② (생 략)

<신 설>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현황 및 그 사업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자료의 내용,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분양

<신 설>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 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 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받은 건축물을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속, 파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 사업 등) ① -----

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② ~ ⑧ (생략)

제48조(보고 및 검사) ① . ② (생략)

<신설>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
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는
경우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보고 및 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 또는 입주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 또는 입주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입주신고에 관한 장부, 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검사 시 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⑥ -----제5항-----

-----.

제5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5.·6. (생략)

③ (생략)

제55조(과태료)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의4제7항-----

5.·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홍보관을 설치한 자

2. 제2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

3. 제28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u><신설></u> 8. ~ 11.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u>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u>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③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입주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현행과 같음) 7의2. 제28조의6제5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8. ~ 11.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	---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제5 1조에 따라 그 권한이 중앙행 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u>정</u>----- ----- ----- ----- ----- ----- ----- ----- ----- -----.
---	--